



PROPOSAL

에너지세제개편관련 등유세금인하 건의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 건의요지 >

□ 현황

-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임
- 올해부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을 앞두고, 2004. 12월 경제장관담화에서 2차세제개편의 정부인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등유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 1차세제개편 100:75:60 ⇒ 2차세제개편 100:85:50(회발유: 경유:LPG)

□ 등유 세금의 문제점

-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의 높은 난방비 지급
 -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 심화
-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수준 차이에 기인
 - 부생연료유는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의 73%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현황
 -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보다 약 18% ~ 43% 높은 실정임

□ 건의사항

- 등유 세금 인하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등유 세금을 사용자의 생활 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 마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1. 현 황

1) 세계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급에 연동하여 인상 중.

〈연도별 상대 가격 조정 계획(1차 세계개편)〉

	수송용			가정용			산업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LPG	LNG	중유	LNG
2000.7월	100	47	26	40	31	37	22	26
2001.7월	100	52	32	43	"	"	"	"
2002.7월	100	56	38	45	"	"	"	"
2003.7월	100	61	43	48	"	"	"	"
2004.7월	100	66	49	50	"	"	"	"
2005.7월	100	70	54	53	"	"	23	"
2006.7월	100	75	60	55	"	"	"	"

주) 휘발유 100 일 때의 상대가격

〈등·경유의 세금 및 소비자가격 추이〉

(단위: 원/ℓ)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12월
경 유	세 금	235.4	267.4	330.1	387.2	473.5
	소비자가격	612.8	646.1	677.6	772.0	939.3
등 유	세 금	136.6	156.0	182.1	217.9	262.7
	소비자가격	559.6	581.6	554.4	638.7	774.3

〈등유의 세금 구성(2004.12월)〉

(단위: 원/ℓ)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부과금	계
금액	154.0	23.1	62.6	23.0	262.7

- 20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2005.1월부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으로 재논의되고 있는 2차 세계개편의 정부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등유세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 2차 세계개편안: 100:75:60 ⇒ 100:85:50(휘발유:경유:LPG)

〈1차 세계개편에 따른 등유세금 추가인상액〉

	2004. 12	2006. 7	추가인상액
특소세	154.0	200.9	46.9
교육세	23.1	30.1	7.0
부가세	62.6	68.0	5.4
부과금	23.0	23.0	-
합 계	262.7	322.0	59.3

- 이 경우 등유가격은 현행(2004.12월) 774.3원에서 2006.7월 833.6원으로 인상됨.

- 그러나, 국제 등유가격의 인상으로 현재 국내 등유가격은 휘발유의 58%로 1차 세계개편으로 인한 2006.7월 정부의 목표수준인 55%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

〈현행 휘발유대비 등유 가격(2004.12월)〉

	휘발유	등 유
소비자가격 (비율)	1,346.36 (100)	774.31 (58)

주)한국석유공사(KNOC) 모니터링 자료 기준임

2) 국내 난방용 연료 사용 현황

- ①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 중
- ② 대도시의 동지역은 도시가스 사용가구수의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사용가구 비율이 높음
- ③ 단독주택은 등유 사용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는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지역별 및 주거형태별 난방 방식 분포〉

(단위:%)

	중앙난방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전기	연탄	기타	계
전국	8.3	6.4	37.0	40.3	3.4	1.6	1.5	1.4	100
동지역	10.2	7.9	45.2	31.7	2.4	0.9	1.0	0.6	100
읍지역	1.5	0.9	7.3	71.5	6.9	3.9	3.5	4.5	100
단독주택			26.5	64.3	1.3	2.5	2.8	2.6	100
아파트	22.5	17.2	47.3	6.5	6.3	0.2	0.1	0.1	100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2000년”

2. 국내 난방용 연료가격 체계의 문제점

1)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의 높은 난방비 지급

- ① 정부는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라는 정책기조 하에 도시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에 우선적으로 보급
- ② 그 결과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등에서는 정부 지원아래 저렴한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확충되지 못한 도시서민과 농어촌 주민 등 저소득계층은 현재까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사업은 경제성분석에 따라 더 이상 확대되기가 곤란하며,
 - 설령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되더라도 저소득계층의 경우, 수 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 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③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정 문제 심화
 -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도시가스)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등유)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역

진정 문제를 심화시킴.

-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겨울에도 방 한 칸만 난방하며 온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소득수준	난방비(동절기)
도시가스	294만원	130,438원
등 유	224만원	219,130원

주) 1. 난방비 계산

$$\text{도시가스} : 250\text{m}^2(\text{월사용량, 산자부}) \times 521.75\text{W/m}^2(\text{가격}) = 130,438\text{원}$$

$$\text{등 유} : 283\text{리터} \times 774.31\text{W/}\ell = 219,130\text{원}$$

$$283\text{리터} = 8,906,308\text{Btu}/5,000\text{원}(\text{등유 성수기}(2004.1\text{월}) \text{ 수요}/\text{등유사용 가구수})$$

2. 소득수준 : 도시가스 : 2003년 월평균 도시근로자가구소득(통계청), 등 유 : 2003년 월평균 농가소득(통계청)

2)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LNG의 6.7배(2004.12, 열량기준)수준에 이르며, 등유와 LNG의 세금은 약 21.5원/천kcal이나 차이가 남.

〈난방연료인 등유와 LNG간 내국세 비교〉

		특소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기타	부가세	합 계
등 유 (원/ℓ)	2004.12 현재	154.0	23.1	23.0	0.3	20.0	220.4 (25.3)
	2006.7 이후	200.9	30.1	23.0	0.3	25.4	279.7 (32.1)
LNG(원/kg)		40.0	-	-	4.8	4.5	49.3 (3.8)

주) 1. 기타 : 등유(품질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 부담금 3.9원/㎡을 kg 단위로 환산)

2. 괄호안은 천kcal당 세액(단위: 원)(열량: 등유 8,700kcal/ℓ, LNG 13,000kcal/kg)



-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73%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업체간 공정경쟁을 위하여 경쟁연료간 동일 과세 필요

〈등유와 부생연료유간세금 비교(2004.12)〉

(단위: 원/ℓ)

	특소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합 계
등 유	154.0	23.1	23.0	20.0	220.1
부생연료유	112.0	16.8	17.0	14.6	160.4

주) 부가세 : (특소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0.1

3.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부과 현황

- 우리나라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3년기준으로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보다 약 18%~43% 높은 실정임.
- 일본 및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들도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저가정책 기초 유지

4. 건의 사항

〈외국의 난방용 유류 및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1,000ℓ)

국가별	Light fuel oil		자동차용 경유(비상업용)	
	소비자가격(A)	세금비중	소비자가격(B)	A/B
한 국	536.3 (100)	34.1%	653.0	82%
일 본	412.6 (77)	4.8%	729.0	57%
프랑스	440.0 (82)	30.9%	896.0	49%
독 일	399.3 (74)	31.2%	1,002.0	40%
스페인	437.2 (82)	35.7%	784.0	56%
영 국	304.6 (57)	26.0%	1,277.0	24%
미 국	365.4 (68)	5.6%	398.0	92%
OECD평균	446.4 (83)		707.0	63%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2003년기준)

2. 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Kerosene임.

1) 등유세금 인하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등유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나 판매부과금을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부과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난방연료로 등유를 사용하는 일본은 휘발유(가솔린세 53.8원/ℓ), 경유(경유인취세 32.1원/ℓ), 항공유(26.0원/ℓ)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
- 일반서민의 생활필수품인 난방연료에 부과되는

〈한-일간 난방용 연료인 등유 세금 비교(2004.12)〉

(단위: 원/ℓ)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부가세(소비세)	합 계
한 국	154.0	23.1	23.0	62.6	262.7
일 본	-	-	-	28.5	28.5

세금은 최소한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도시가스(LNG)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2)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 마련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에 대한 우려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강화 등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